

【주간보호센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】

1. 이용정원은 주간보호센터 32인으로 한다.
2. 모집방법은 장기요양등급 1~6등급 및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

【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】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공단” 이라고 한다)에서 이용자에게 발부한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기간이 변경(갱신)될 경우 재계약을 체결한다.
2.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3. 계약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4. 기관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15%로 정한다. 다만, 의료수급 조건에 따라 경감은 9%, 6%, 기초생활수급자는 0%를 적용한다.
5. 조식비 3,000원, 중·석식비 3,500원, 간식비 500원으로 한다. (월 20일 기준 150,000원)
6. 1일 수가 및 등급별 월한도액은 아래 표와 같다.

① 1일 수가 및 본인부담금

주간보호 (20일, 8시간 이상~10시간 미만 기준) 본인부담금 15% 기준				
구분	수가	총액	본인부담금	식대
1등급	69,730	1,394,600	209,190	150,000
2등급	64,590	1,291,800	193,770	
3등급	59,640	1,192,800	178,920	
4등급	58,010	1,160,200	174,030	
5등급	56,360	1,127,200	169,080	
6등급	56,360	676,360	101,450	

② 등급별 월한도액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,512,900 원	2,331,200 원	1,528,200 원	1,409,700 원	1,208,900 원	676,320 원

【주간보호센터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】

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및 보호자 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1.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 - ① 이용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
 - ② 급여 계약에 따라 서비스제공 의무
 - ③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 - ④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2. 이용자의 의무
 - ① 월 이용료 납부
 -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 - ③ 기관내의 청결 의무
 -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 -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
 -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

3. 보호자의 의무

-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-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제반비용 부담
-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/급여종류 변경 시 즉시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
-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
- ⑤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

【 주간보호센터 계약자의 해지 】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- 1. 제 13조 1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
- 2. 제 14조 당사자간의 계약의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서비스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4.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5.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6. 기관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운영 또는 타서비스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- 7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서비스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8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이용중 지병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때